

외국인 관광객 지하철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메트로스테이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(MOU)

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울메트로스테이 (SeoulMetroStay)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(이하 ‘공사’ 라 한다)와 (주)위홈(이하 ‘위홈’ 이라 한다)과 (주)코인플러그 (이하 ‘코인플러그’ 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 한다.

제1조(정의) 서울메트로스테이는 지하철역에 인접한 우수 숙소를 공유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이동과 관광 및 편의 서비스를 연계한 지하철 기반 스마트 관광서비스를 지향한다.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숙박, 이동 및 관광을 연계한 종합서비스로서 공유숙박, IoT, MaaS 및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한다.

제2조(목적) “본 양해각서는 기술된 상호 협력내용을 기초로 한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잠재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호협력 의사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기본원칙) 참여사는 서울메트로스테이 사업을 통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, 일자리 창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참여사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
제4조(신의성실) 참여사는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.

제5조(의무사항) 각 기관은 서울메트로스테이 사업을 위하여 지하철 이용권, 공유숙박권, 관광 입장권, 편의서비스 등의 연계 운영을 위한 상호간 시설물, 기술 및 경험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상호 성실히 지원한다.

1. 공사 : 지하철 이용증진을 위하여 서울메트로스테이 서비스와 관련한 지하철 자유이용권과 지하철 도보여행 콘텐츠 등
2. 위홈 :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 우수 숙소 확보 및 지하철 자유이용권과 함께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예약, 결제 및 지불 서비스 제공 등

3. 코인플러그는 서울메트로스테이 서비스 진행관련 블록체인 기반 월렛 및 이동 서비스 확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제공 등

제6조(유효기간)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제7조(비밀보호) 참여기관은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양해각서가 정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,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

제8조(비용)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 상대방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9조(의향서의 변경) 참여기관은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양해각서를 변경할 수 있다. 세부 사업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서와 계약서를 통해서 진행한다.

본 양해각서는 3부를 작성한 후 날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.

2019년 5월 16일



서울교통공사

사장 김태호



(주)위홀

대표 조산구



(주)코인플러그

대표 어준선

July 1st 1993